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사유

2004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일·숙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조례에 실비보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기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일·숙직근무자에 대한 실비보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4항 신설)

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안 제22조제6호)

3.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4. 검토의견

본 개정안은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공무원의 일·숙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는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삽입하려는 것과 다양한 사회로 변화되는 시대에 부응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단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사료됨.

2003. 12.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성